

# [필수]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 · 조회 · 제공 동의서

## (주)빌리언대부 귀중

귀사와의 (금융)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· 이용 및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및 제22조, 제24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제33조, 제34조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26조의 2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### 1. 개인(신용)정보의 필수적 수집·이용 동의

귀사와의 (금융)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□ 수집·이용 목적: (금융)거래관계의 설정여부 판단, (금융)거래관계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,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등

#### □ 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

- 개인식별정보: 성명, **고유식별정보**, 국내거소신고번호, 국적, 신분증 발급일자 또는 일련번호, 주소, 전자우편 주소, 전화번호
  - 일반개인정보: 직장/직업정보(직장명, 직장주소, 부서명, 직위, 고용형태, 입사년월일, 급여일, 업종, 사업자번호), 거주정보, 동거가족, 입금계좌, 채류자격, 채류기간
  -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담보물건 관련 정보(주택담보: 부동산 관련 정보, 유체동산담보: 유체동산 관련 정보, 보험담보: 보험계약 관련 정보, 전월세: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, 자동차담보: 차량번호, 차대번호, 자동차 종류, 자동차 매매계약정보, 자동차 등록정보)
  - 신용거래정보: 대출(현금서비스 포함), 채무보증, 신용(체크)카드 등 신용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  - 신용도판단정보: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된 발생사실,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  - 신용능력정보: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소유부동산정보, 임대차계약정보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  - 공공기관정보: 개인회생, 파산, 면책, 채무불이행등재 등 법원의 재판·결정 정보, 체납정보, 경매 관련 정보, 주민등록 관련 정보, 사회보험·공공요금 관련 정보 등
  - 기타 개인신용평점 및 금융거래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를 위한 상담,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
- ※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

□ 보유 및 이용기간: 귀하와의 (금융)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(금융)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·이용되며, (금융)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귀하가 신청한 (금융)거래가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보유·이용되며, 거절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

※ (금융)거래 종료일이란 채권·채무관계가 해소된 날을 뜻합니다.

◆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동의  동의하지 않음

◆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동의  동의하지 않음

※ **고유식별정보: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**

## 2.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

귀사와의 (금융)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: 개인식별정보, 신용평점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능력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자사신청정보, 신분증 진위여부 등

조회목적: 계약 등 대부거래의 체결·유지·이행·관리

조회대상기관: 신용조회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, 공공기관, 통신회사

**조회동의 효력기간: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(금융)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(금융)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意的 효력이 지속됩니다. 다만, 귀하가 신청한 (금융)거래가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意的 효력은 소멸합니다.**

※ (금융)거래 종료일이란 채권·채무관계가 해소된 날을 뜻합니다.

※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단, 본 신용조회는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, 개인신용평점 미보유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개인신용평점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.

◆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  동의하지 않음

◆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  동의하지 않음

※ 고유식별정보: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
## 3. 개인(신용)정보 필수적 제공 동의

귀사와의 (금융)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)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

제공받는 자: 신용정보 집중기관 - 한국신용정보원, 신용조회회사 - NICE평가정보주

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: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

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: 개인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능력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자사신청정보,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

보유 및 이용기간: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래가 존속하는 기간까지

2) (금융)거래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를 위한 개인(신용)정보 제공

제공받는 자: 전산시스템 관리, 계약서 수령 업무, 대출모집, 채권회수 등의 목적을 위한 수탁업체 및 자금차입에 대한 담보제공 업체

제공목적: (금융)거래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

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: 수집·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제공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

제공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: 당사는 위 업체에게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, 위 제공대상 업체 현황 및 이용목적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보유 및 이용기간: 개인(신용)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됩니다.

※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(신용)정보의 정확성,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◆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  동의하지 않음

◆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  동의하지 않음

※ 고유식별정보: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
년 월 일 생년월일: 성명: (서명/인)

※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. 또한 상기 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.

#### 4. 모바일 전자고지 사전동의

귀사와의 (금융)거래와 관련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, 제8조제1항,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서면을 말한다. 다만 서면에 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미리 합의한 방법으로 서면을 대체할 수 있다.

목적: 본 동의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모바일 통지를 발송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다.

통지방법: 채권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.

1) 모바일 통지 (MMS, 앱 푸시 알림 등)

2) 이메일 통지

동의: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하며,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관련 서류 및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다.

효력: 본 동의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채무자가 통지를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.

◆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모바일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  동의하지 않음

년 월 일 생년월일: 성명: (서명/인)